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행령

이용권/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실장

## 1. 저장능력 10톤의 저장탱크에 Non Seal Pump 설치 후 LPG 자동차 엔진에 공급할 경우 충전 시설 허가 여부

**Q** 저장능력이 10톤이 저장탱크에 Non Seal Pump를 설치하고 액상으로 자동차 성능테스트를 위한 LPG 자동차 엔진에 공급할 경우 충전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저장탱크에서 Non Seal Pump 및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용처가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LPG 자동차용 엔진에 직접 공급한다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각각 저장설비와 사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탄캔(C<sub>4</sub>H<sub>10</sub>) 충전 공장 건설에 고압가스 충전시설 허가 득해야 하나

**Q** 저는 지방 논공단지 내에 부탄캔(C<sub>4</sub>H<sub>10</sub>) 충전 공장을 건설중입니다. 위 사업의 허가를 고압가스 충전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을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등과 관련된 사항인 바, 그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관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 3. 용기판매를 하지 않고 벌크사업만 하는 경우 판매허가가 있어야 하나

**Q** ① 용기판매를 하지 않고 벌크사업만 하는 경우 판매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② 전국적으로 벌크공급을 할 수 있는지?

**A**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용기에 충전된 LP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LP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시킨 취지는 LP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존의 용기판매사업 외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벌크사업)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준 것이며 용기에 의한 판매 없이 벌크사업만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산업자원부 유권해석

이 있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령에서는 벌크로리에 의한 판매를 할 경우 지역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4. LPG집단가스공급업체가 지하5톤, 세대수 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에 공급, 관리 가능한지

**Q** LPG집단가스공급업체가 허가대상이 아닌 지하5톤, 세대수 50세대 규모의 사용신고시설의 공동주택을 공급, 관리할 수 있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및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공급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은 집단공급 시설에 의한 가스공급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액화석유가스판매소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영업이 가능한가

**Q** 부탄자동차 충전소 내 액화석유가스판매소가 영업중 2002년도에 폐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가능한지?

**A**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제나목(6)(라)의 규정(2002.04.12 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용기충전시설 내에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용기보관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 6.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LPG 충전소 허가 시 기존 충전소와의 이격거리 측정에 있어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이어져 있을 경우 이격거리는?

**Q**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LPG 충전소를 허가함에 있어 기존 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편측 5k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노선에 따라 같은 편측 5km 안의 도로가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어져 있을 경우  
① 이격거리는 모두 합한 거리로 5km를 확보하면 되는지?  
② 이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관청은 다른 법령에의 적합여부 및 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관련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에 관련된 다른 법령 및 허가관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동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 7. 전용공업지역 내의 한 공장에 LPG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를 갖추어 인근다른 공장들에 가스 공급할 경우 법적 절차

**Q** 전용공업지역 내의 한 공장에 LPG저장설비(저장능력 10톤) 및 가스설비를 갖추어 인근의 다른 공장들에 배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 한 공장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 10톤)를 설치하고 다른 공장에 배관을 통하여 LP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개소가 70개소 이상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톤의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서 저장소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LPG사업(충전, 집단공급 등)과는 달리 저장자 자체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저장소로부터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동법령의 추지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8. 용량 40톤의 가스저장시설을 갖추고 액화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공장에서 공장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 가능한지**

**Q** 저희 공장(이하 A)에서는 용량 40톤의 가스저장시설을 갖추고 액화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고 하며 공장의 관리/운영은 전문업체(이하 B)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비롯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A는 B에게 일반 관리업무에 더하여 안전관리업무도 위탁이 가능한지?

**A**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귀사의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저장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채용한 소속 직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9. 주유소와 충전소를 한 곳에서 운영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Q** 주유소와 충전소를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충전시설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동차 충전소 두 곳을 운영하는 경우 한 곳의 안전관리자 부재시 옆 충전소 안전관리자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에서는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주유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원이나 가스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10. 주물버너를 사용하여 숯불을 점화한 후 버너를 분리하고 숯불만으로 고기를 굽는 제품의 검사 여부**

**Q** 숯불을 사용하는 기구에 검사품인 주물버너를 사용하여 숯불을 점화한 후 버너를 분리하고 숯불만으로 고기를 굽는 기능을 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여부

**A** 숯불구이기에 사용되는 주물버너가 숯불구이기에 고정·설치되지 않고 단순히 점화용으로만 사용하고 숯불구이기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물버너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11. 중화용 렌지 밑에 별도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소기에 강제로 공기 주입 가능 여부**

**Q** 중화용렌지에 송풍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렌지 밑에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강제로 연소기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송풍기는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고 사용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표시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이미 검사를 득한 연소기에 별도로 배관을 연결하여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연소기에 추가로 강제 공기주입이 필요하다면 강제공기주입을 위한 송풍기를 포함하여 연소기 전체를 하나의 가스용품으로 정밀검사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12.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이수증 취득한 경우 연소기 등 수리 가능 여부

**Q**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이수증을 취득한 경우 연소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에서는 가스용품의 수리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스용품은 제조사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므로 시공관리자 자격만으로 임의로 연소기를 수리하는 것은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사용고지서에 '안전관리비' 고지의 근거는?

**Q**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달 사용하는 고지서에 '안전관리비'가 고지되는데 고지되는 근거는?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을 확인하거나 또는 관할 허가관청(시·군 또는 구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 요금의 산정방법,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 부담액 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 14. 개인택시지부에서 LPG충전소 운영에 있어 회원 중 LPG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한 회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Q** 개인택시지부에서는 각 회원들이 출자를 하여 LPG충전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원들 중에는 LPG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이 있는 경우 그 회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운영하여도 가능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되며, 동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충전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동 충전사업소 내에 근무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또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동 회원을 충전소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곤란하다.

## 15. 80세대 5동에서 각 동마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1.6톤×3기, 1톤×2기)하여 공급 중 집단공급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용시설 양성교육 이수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가능 여부

**Q** 80세대 5동인데 각 동마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1.6톤×3기, 1톤×2기)하여 공급중이며 허가는 집단공급으로 받은 경우 이곳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사용시설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중 수용가 500가구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이어야 한다. ☺